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7.(수) 09:00 2022. 9. 7.(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9. 7.(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47)
		담당자	서기관 이영기 (044-202-7352) 사무관 천춘희 (044-202-7359)

예술인 ·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기준 등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예술인 ·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요건 완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적용**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예술인 ·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예술인('20.12), 노무제공자 12개업종('21.7), 2개업종 추가('22.1), 5개업종 추가('22.7)

* 예술인 가입규모(누적 순인원): ('21.7) 56,899명→ ('21.12) 106,652명 → ('22.7) 138,864명
노무제공자 가입규모(누적 순인원): ('21.7) 15,968명 → ('21.12) 543,597명 → ('22.7) 685,562명
<플랫폼 포함 시 990,562명>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가입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도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적용했으며, 그 지원실적**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저소득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적용 지원을 위해 근로자·사업주 등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최대 80%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

** 두루누리 지원실적
예술인(월 평균): ('21) 1,468명 → ('22) 1,814명(346명, 23.6% 증가)
노무제공자(월 평균): ('21) 5,217명 → ('22) 8,632명(3,415명, 65.5% 증가)

그간의 노력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혜 실적**이 아직 협소한 편으로 나타났다.

* '22.7월 평균 근로자 지원자(775,433명) 대비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자수(10,446명)가 1.35%에 불과

이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특성이 있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 소규모 사업장 재직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자
저소득자 :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따라서 앞으로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종사자 부담분**에 한정)**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 (現)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
(改)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이번 지원요건 완화로 '23년에는 예술인·노무제공자 17.1만명(예술인 0.5만명, 노무제공자 16.6만명)에게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적용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계약기간이 짧고, 근로자에 비해 낮은 고용보호 등으로 인해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재직 중이 아닐 경우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신기간, 유사 지원사례** 등을 고려하여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022. 6. 10. 개정 「고용보험법」(`22.12.11 시행 예정)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출산일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3〉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기준 정비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무부담이 상당하고, 임금대장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지원금액의 상한 : 정액(60만원)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음
제외대상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를 고용한 경우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면서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도록 정비한다.

2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 여러 사업주가 컨소시업을 구성한 "사업주단체"로서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수가 50% 이상이고,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 이상인 경우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정원비율 50%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지원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예시** >
- ▲ 45~49%: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액의 **5% 감액 지급**
- ▲ 40~44%: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액의 **10% 감액 지급**

3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반복될 경우에도 자영업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한다.

* (현행)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전년 대비 소득감소**가 있어 **이직**한 경우,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4〉 기타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 등

❶ 노무제공자의 사업주가 아님에도 고용보험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의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구체적 지원내용**을 정한다.

* 2022. 6. 10.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3.1.1 시행예정)

** 피보험자관리 지원금(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에 대한 지원) 및 징수사무대행 지원금(월보험료 납부에 대한 지원)

❷ 보험사무대행기관과 관련하여, 자진폐지·인가취소 후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1년의 범위 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가폐지·취소 후 재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사유별로**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설정***한다.

* 2022. 6. 10. 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3.1.1 시행예정)

* 인가폐지·취소의 사유별로 폐지신고일부터 3개월~1년

❸ 그 밖의 **고용보험 사무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독촉고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절차·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개선('19.12.)으로 회원가입 없이 **사용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및 인증서**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적용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면서,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보험기획과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47)
		담당자	서기관 이영기 (044-202-7352) 사무관 천춘희 (044-202-7359)
자영업자 구직급여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책임자	과 장 이도경 (044-202-7919)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2-7925) 사무관 이현규 (044-202-7927)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8039)
		담당자	사무관 김영옥 (044-202-7350)
출산전후급여 직장어린이집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2-7412) 주무관 임지우 (044-202-7480)
고용촉진장려금	코로나19 대응 고용회복지원반	책임자	과 장 박병기 (044-202-7292)
		담당자	사무관 조병돈 (044-202-73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